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산림청 일선기관의 산업안전·보건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하여 산림청 소속기관에 산업안전·보건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 18명(7급 17명, 8급 1명)을 증원하되, 임기제공무원으로 충원하려는 것임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2021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 및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1. 00. 00. ~ 00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에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⑩ 제3항에 따라 산림항공본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산업안전·보건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2명(7급 2명)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.

⑪ 제5항에 따라 지방산림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산업안전·보건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10명(7급 10)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.

별표 6 중 총계 “227”을 “229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227”을 “229”로 하며, 운전주사보 1 다음에 “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”을 신설하고,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 다음에 “보건주사보 1”을 신설한다.

별표 6의2 중 총계 “227”을 “229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227”을 “229”로 하며, 운전주사보 1 다음에 “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”을 신설하고,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 다음에 “보건주사보 1”을 신설한다.

별표 7 중 총계 “719”를 “729”로 하고, 1. 공무원(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) 및 일반직 계 “704”를 각각 “714”로 하며, 행정주사보·임업주사보 또는 임업연구사 10 다음에 “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5”를 신설하고,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5 다음에 “보건주사보 5”를 신설한다.

별표 7의2 중 총계 “727”을 “737”로 하고, 1. 공무원(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) 및 일반직 계 “712”를 각각 “722”로 하며, 행정주사보·임업주사보 또는 임업연구사 10 다음에 “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5”를 신설하고,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5 다음에 “보건주사보 5”를 신설한다.

별표 8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“254”를 각각 “257”로 하고, 4급 이하 “249”를 “252”로 한다.

별표 8의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“67”을 각각 “69”로 하고, 4급 이하 “66”을 “68”로 한다.

별표 9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“102”를 각각 “103”으로 하고, 5급 이하 “101”을 “102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2조(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 삭 제 ② ~ ⑨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22조(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② ~ ⑨ (현행과 같음) <u>⑩ 제3항에 따라 산림항공본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산업안전·보건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2명(7급 2명)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.</u> <u>⑪ 제5항에 따라 지방산림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산업안전·보건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10명(7급 10명)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.</u>
<u><신 설></u>	

신·구정원대비표

[별표 6]

산림항공본부 공무원 정원표(제22조제3항 본문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<u>227</u>	<u>229</u>	+2
일반직 계	<u>227</u>	<u>229</u>	+2
•	•	•	
•	•	•	
운전주사보	1		
<u>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</u>	<u><신 설></u>	<u>1</u>	+1
<u>보건주사보</u>	<u><신 설></u>	<u>1</u>	+1
•	•	•	
•	•	•	

[별표 6의2]

산림항공본부 공무원 정원표(제22조제3항 단서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<u>227</u>	<u>229</u>	+2
일반직 계	<u>227</u>	<u>229</u>	+2
·	·	·	
·	·	·	
운전주사보	1		
<u>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</u>	<u><신 설></u>	<u>1</u>	+1
<u>보건주사보</u>	<u><신 설></u>	<u>1</u>	+1
·	·	·	
·	·	·	

[별표 7]

지방산림청 공무원 정원표(제22조제5항 본문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<u>719</u>	<u>729</u>	+10
1. 공무원(시간선택제채용공무 원은 제외한다)	<u>704</u>	<u>714</u>	+10
일반직 계	<u>704</u>	<u>714</u>	+10
·	·	·	
·	·	·	
행정주사보·임업주사보 또 는 임업연구사	10		
<u>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</u>	<u><신 설></u>	<u>5</u>	+5
<u>보건주사보</u>	<u><신 설></u>	<u>5</u>	+5
·	·	·	
·	·	·	

[별표 7의2]

지방산림청 공무원 정원표(제22조제5항 단서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<u>727</u>	<u>737</u>	+10
1. 공무원(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은 제외한다)	<u>712</u>	<u>722</u>	+10
일반직 계	<u>712</u>	<u>722</u>	+10
•	•	•	
•	•	•	
행정주사보·임업주사보 또 는 임업연구사	10		
<u>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</u>	<u><신 설></u>	<u>5</u>	+5
<u>보건주사보</u>	<u><신 설></u>	<u>5</u>	+5
•	•	•	
•	•	•	

[별표 8]

국립산림과학원 공무원 정원표(제22조제6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<u>254</u>	<u>257</u>	+3
일반직 계	<u>254</u>	<u>257</u>	+3
·	·	·	
·	·	·	
4급 이하	<u>249</u>	<u>252</u>	+3

[별표 8의2]

국립수목원 공무원 정원표(제22조제7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<u>67</u>	<u>69</u>	+2
일반직 계	<u>67</u>	<u>69</u>	+2
·	·	·	
4급 이하	<u>66</u>	<u>68</u>	+2

[별표 9]

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공무원 정원표(제22조제8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<u>102</u>	<u>103</u>	+1
일반직 계	<u>102</u>	<u>103</u>	+1
·	·	·	
5급 이하	<u>101</u>	<u>102</u>	+1